2025년 의료 · 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사업 공고

창원시 내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·바이오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『2025년 의료·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사업』에 대 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> 2025년 3월 (재)창원산업진흥원 원장

필독 사항

- 본 사업은 '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제 1장 제 3조(적용범위)2항'에 의거 하여 동지침 적용 예외 사업
- '창원시 의료바이오 혁신기업 육성계획','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,'지방 보조금 관리기준','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','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,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'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함
- 규정되지 않은 사업비 지급 및 관리는 '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','산업기술혁신 사업 공통 운영요령'에 준하여 사용 집행되어야 함
- 의료·바이오 기술개발을 통한 "사업화"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
- 주관기관 창원 소재 중소기업 필수. 컨소시엄 구성 필수(산·학·연·병)
-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% 이상 필수(현금+현물)
- 선정 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
- 과제 규모, 사업비 편성내역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 가능
- 선정 전·후 허위사실 기재,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,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, 참여제한,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
-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, 추후 사업 참여 제재
- [붙임]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

시업추진 개요

○ (목 적) 시장성이 높고, 원천성, 권리성 강한 의료바이오 분야 첨단기기 (device)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, 창원에서 생산함으로써 창원산업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구 분	세부 내용
지원 규모	1개 과제, 사업비 4.5억 원
사업 기간	협약일로부터 24개월 간
주관기관	주관기관은 납세지가 창원이며 창원에 주된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 등)을
자격 조건	보유한 법인 중소기업
추진 방식	관내·외 소재 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, 병원 등) 과의 컨소시엄 구성

- (지원분야) 창원시 의료·바이오 산업 중점 육성 분야(기술내용)
 - (1유형) AI·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진단기기 및 진단시스템
 - (2유형) AI·빅데이터 기반 첨단 의료로봇
 - (3유형) 우리시 소재 연구기관 연계 의료·바이오 기술 산업화
- O (대 상) 1개 컨소시엄

Ⅲ 사업지원 개요

- (선정규모) 1개 컨소시엄(창원시 의료바이오 혁신기업 컨소시엄)
- (추진방식) 컨소시엄(필수)
 - 주관기업: 납세지가 창원이며 창원에 주된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 등) 보유 중소기업
 - 참여기업: 관내·외 원천기술보유 기업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컨소시엄 예시 : 기업+대학, 기업+병원, 기업+연구소, 기업+대학(병원 혹은 연구소)+대학(병원 혹은 연구소), 기업+대학(병원 혹은 연구소)+기업, 기업+대학+연구소+병원 등

- (지원금액) <u>최대 4.5억원</u>
 - 기업부담금: 시지원금의 25%이상 부담(현금+현물)

(민간부담금은 지원금액의 25%이상, 그중 현금은 10%이상)

7 8	초시어비(기)	시키이그(니)		민간부담금	
구분	총사업비(가)	시지원금(나)	총액(다)	현금(라)	현물(마)
구성 기준	(나)+(다)	선정금액	(나)의 25% 이상	(다)의 10% 이상	(다)-(라)
(예시)	562,500,000	450,000,000	112,500,000	11,250,000	101,250,000

- (지원기간) 2년간 (협약시점 + 2년)
 - * 2년 후 성과평가를 시행, 후속지원 여부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부여 가능
 - * 신청단계 기술성숙도(Technology Readiness Level) 6단계 이상 기술 신청가능

단계	TRL1	TRL2	TRL3	TRL4	TRL5	TRL6	TRL7	TRL8
	기본원리	개념정립	개념검증	시	작품	시제품	비임상	임상
내용	기초이론 정립	기술개념 정립	특허출원/ 기본성능 검증	설계 제작	성능평가 (비임상 포함)	설계제작 성능평가	안전성 유효성 평가	인·허가

Ш

신청자격 및 신청방법

① 신청자격

- 주관기업은 납세지가 창원이며 창원에 주된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 등)을 보유한 법인 중소기업(공고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, 6개월 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기업)
- O 참여기업은 창원 관내·외 원천기술 보유 기업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 생산기술연구소

2 선정기업 이행사항

- O 선정기업 이행사항
 - 협약체결 시 창원시 지원금 100%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
 - · 보증기간: 사업예정기간 + 6개월
 - ·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는 사업비에서 소급 지급 가능
 - ·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 취소

③ 지원 제외대상

- O (중복성 검토)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되었거나, 기존 개발된 과제와 같은 경우
 - * 유사과제 검색 방법: www.ntis.go.kr 로그인 → 과제참여 → 유사과제 → 유사성 검토
 - * 기타 창원산업진흥원, 경남테크노파크 등 지원기관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
- O (의무사항 불이행)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정산금,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*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 - ** 검색 방법 : www.smtech.go.kr 로그인 \rightarrow 과제수행 \rightarrow 제재조회 \rightarrow 중기 R&D사업 제재 조회

- (참여제한)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* 검색 방법: www.ntis.go.kr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제재정보조회 등
- (신용 및 기업상태)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, 참여기관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 또는 부실위험 기업 ※ 세부내용 [붙임.3] 참조

△ 신청방법, 제출기한 및 접수처

- (신청방법)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접수 * 오프라인(방문) 서류 제출 불가
- (공고기간) 예정2025. 3. 31.(월) ~ 6. 30.(화), 3개월
- (양식교부 및 안내) 창원산업진흥원(www.cwip.or.kr) → 사업신청 → 지원 사업 신청 → 모빌리티의료바이오팀 → 2025년 의료·바이오 첨단기기 제조 산업 육성사업
- (온라인접수처) 창원산업진흥원(https://www.cwip.or.kr) → 지원사업 신청
 * 기업 회원 가입 후 신청진행

○ (접수시 유의사항)

- 전산등록과 함께 신청서, 첨부서류를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
 - ※ 직접방문 접수(오프라인 접수) 불가
-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비롯한 첨부서류 전체가 제출 완료되어야 하며, 마감일 이후 제출된 서류는 불인정
- 회원가입,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~3일전 과제가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등록 권장
-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보유기간(선정 후 5년간) 이후 파기 예정
- O TRL단계에 따른 요구성과 (사업계획서 반영)

구 분	주요 내용
증빙 서류	- 지식재산권(특허 국내.외 출원 및 등록) - 논문(SCI(SCEI포함)급, 국내외 학회발표지 등) - 시제품 제작 - 시제품 시험평가 공인시험성적서 - 비임상시험 공인시험성적서 - 임상시험 신청서 및 증빙(IRB 등) - 품목허가 신청 및 증빙

5 제출서류

구분	서 식 명	제출형태
	과제계획서 (계획서 70쪽 이내, 요약본 3쪽 이내, 제출서식 참조) ※ 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제출	
계획서	기술개발전략 로드맵 [사업계획서 붙임5]	
	시장진출전략 로드맵 [사업계획서 붙임6]	
	제품생산계획서 [사업계획서 붙임7]	
	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[사업계획서 붙임1]	
	개인정보 제공·수집·이용 동의서 [사업계획서 붙임2]	
	과제(부문)책임자가 최근 3년 동안 수행했던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 R&D·기 업 지원사업 현황 [사업계획서 붙임3]	
적격여부	참여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(명)	
확인서류 [필수]	R&D유사과제 검색 결과 확인서 (NTIS)	한글(HWP)/
	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(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) ※ 주관기관 필수, 참여기관(영리)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	스캔(PDF) 온라인 업로드
	보유기술이 TRL 6 단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* * 유효성 평가 통과 증빙서류, 비임상시험 공인시험성적서, 임상시험 신청서 및 증빙(IRB 등), 품목허가 신청 및 증빙서류 등 기타 TRL6단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** 증명자료는 서면평가시 관련내용 검증	
	연구장비·시설 구입 계획서 [사업계획서 붙임4]	
	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	
	국내특허(등록 및 출원)	
추가서류 [해당시]	국제특허(등록 및 출원, PCT 포함)	
[5 ,]	참여(기술제공) 기업 관계자의 국내·외 논문	
	창원시 및 경상남도 기업(기관, 연구소, 병원 등) 연계방안	
	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 체결 서류	

^{*} 증빙 제출서류만 선정평가 점수에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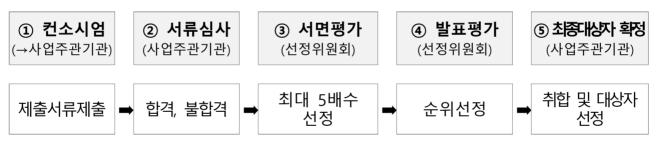
₩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절차

□ 선정위원회 구성

- O (원칙)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
- O (구성) 선정위원회는 산업·연구계·관련학과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을 갖춘 자
- (상피)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, 최종 출신학교, 현 소속기관에 대한 상피제를 적용하여 평가 공정성 확보
 - 심사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**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특정** 심사위원 배제 요청 시 제외 검토

② 선정 절차

▮[참고] 의료·바이오 혁신기업(컨소시엄) 선정절차 ▮



○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점수는 최고점 1개,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삭하여 점수 산출(단,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최고,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음)

○ 서류심사(사업운영기관 심사)

- 서류심사는 기업의 지원조건 충족 여부, 재무 건전성 등의 지표로 합격, 불합격으로만 판단

○ 서면평가(선정위원회 심사)

- 선정위원회는 평가표의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,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 컨소시엄 중 순위에 따라 5배수 내외 컨소시엄 선정
- 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전화 면접 또는 추가 자료제출 요청 가능

※ 서면평가표(안)

영역		평가 주안점	배점			
정책부합성		• 우리시 의료·바이오 중점 육성 방향과 일치하는가? (해당 분야 명시) ※ 창원시 의료·바이오 산업 중점 육성 분야(세부내용 별첨참고) (1유형) AI·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진단기기 및 진단시스템 (2유형) AI·빅데이터 기반 첨단 의료로봇 (3유형) 우리시 소재 연구기관 연계 의료·바이오기술 산업화	적격/ 부적격			
	 신청한 의료・바이오첨단기기가 기존 기기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가? 해당 기술 및 제품이 창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,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과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? ※ 사업계획서에 혁신성에 대한 내용 반영 해당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기술·품질인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?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R&D 투자실적은? AI・빅데이터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? ※ 필수서류: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R&D 투자실적, 기술 · 품질인증 서류 	15				
정량 (40)	원천성 및 권리성	• 제품의 원천성이 강하고 권리성의 확보가 잘되어 있는가? ※ 사업계획서에 원천성과 관리성에 대한 내용 반영 ※ 필수서류 : 국제특허(등록 및 축원 PCT 포함) 국내특허(등록 및 축원 제공 기숙 관련				
	기술 개발 역량	연구개발 계획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제시하였는가?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 조정 방안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? 제품의 연구개발, 시제품의 생산 등을 위한 R&D 전담인력 비중은 적절한가?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기존 관련 국책사업 R&D 추진 수행실적은? ※ 필수서류: R&D 전담인력(인) 비중, 국책사업 R&D 수행실적(건)				
	사업화 가능성	• 제시된 기술의 기술성숙도(TRL6 이상)가 사업화가 가능한 단계인가?(단계별가점) • 사업화에 대한 준비(기술개발정도, 제품제작능력 등)가 잘되어 있는가? ※ 필수서류: TRL6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	20			
사업성 (60) • 제품에 대한 시장분석이 면밀하게 되어 있는가? • 제품의 효율적인 유통 방법과 판매처 확보계획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? ※ 필수서류: 시장진출전략 로드맵			20			
	의료 · 바이오 제조 산업의 창원 집적	• 창원시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방안과 투자전략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? • 컨소시엄 참여기업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었는가? • 창원 관내 기업(기관, 병원 등)과의 연계방안이 잘 수립되어 있는가? •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가 도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? ※ 필수서류: 제품생산계획서 ※ 추가서류: 창원시 및 경상남도 기업(기관, 연구소, 병원 등) 연계방안	20			

○ 발표평가(선정위원회 심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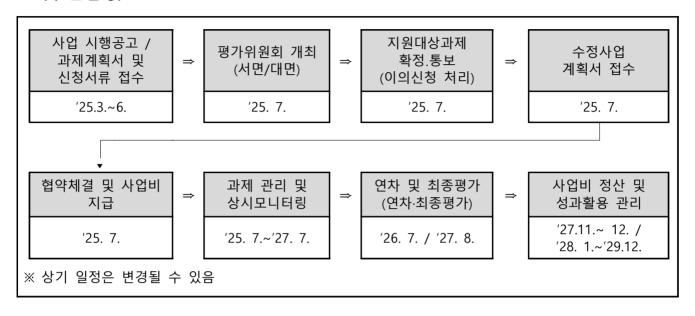
- 선정위원회는 서면평가 점수를 참고하여 평가표의 발표내용과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,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컨소시엄을 순위별로 선정
- 기준에 부합하는 컨소시엄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음

※ 발표평가표(안)

영	역	평가 주안점	배점			
정책부합성		• 우리시 의료·바이오 중점 육성 방향과 일치하는가? (해당 분야 명시) ※ 창원시 의료·바이오 산업 중점 육성 분야(세부내용 별첨참고) (1유형) AI·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진단기기 및 진단시스템 (2유형) AI·빅데이터 기반 첨단 의료로봇 (3유형) 우리시 소재 연구기관 연계 의료·바이오기술 산업화	적격/ 부적격			
• 신청한 의료·바이오첨단기기가 기존 기기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 • 해당 기술 및 제품이 창 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, 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과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? ※ 사업계획서에 혁신성에 대한 내용 반영 • 과제계획서의 내용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인 • AI·빅데이터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? ※ 필수서류: 과제계획서, 과제계획서 요약본						
기술성 (70)	원천성 및 권리성	• 제품의 원천성이 강하고 권리성의 확보가 잘되어 있는가? ※ 사업계획서에 원천성과 관리성에 대한 내용 반영 ※ 필수서류 : 국제특허(등록 및 축원 PCT 포함) 국내특허(등록 및 축원 제공 기술 관련				
	기술 기술 개발 전략 • 연구개발 계획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제시하였는가? •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 조정 방안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? • 제품의 연구개발, 시제품의 생산 등 연구비 투자 규모 및 계획은 적절한가? •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제조를 위한 걸림돌(저해요소)을 분석하고,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는가? ※ 필수서류: 기술개발전략 로드맵					
	사업화 가능성	• 제시된 기술의 기술성숙도(TRL6 이상)가 사업화가 가능한 단계인가?(단계별가점) • 사업화에 대한 준비(기술개발정도, 제품제작능력 등)가 잘되어 있는가? ※ 필수서류: TRL6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	10			
사업성 (30) • 제품에 대한 시장분석이 면밀하게 되어 있는가? • 제품의 효율적인 유통 방법과 판매처 확보계획이 적절하고 구처수립되었는가? ※ 필수서류 : 시장진출전략 로드맵			10			

사업추진관리 및 평가, 사후관리

○ (추진일정)



○ (평가절차)

- (1단계) 사전검토: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
- (2단계) 서면평가: 서면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실시하며, 신청과제의 경쟁률이 5:1 초과인 경우 별도의 서면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지원예정 과제의 5배수까지 선정
- (3단계) 발표평가: 7인 산·학·연 외부전문가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운용하고,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과제별 발표시간 15분, 질의응답 15분(PPT를 활용한 주관연구책임자 발표)
- **(4단계) 평가결과심의**: 평가절차 및 결과의 타당성 등 내부심의를 거쳐 선정 대상 과제 확정
- (5단계) 최종선정공고: 평가위원 지적사항 등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진행 후 사업추진

○ (사업협약)

-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창원산업진흥원은 사업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한다.
- 선정된 기업의 기술개발이 부진하거나,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협약은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고,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될 수 있다.

○ (사업 평가 및 관리)

- 선정기업은 사업평가 또는 관리를 위한 창원산업진흥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
- 연차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며, 필요에 따라 수시평가를 진행 할 수 있다.
- (선정기업 지원) 선정기업의 기술개발(사업화) 실적에 따라 아래 사항 지원
 - 창원시에서 추진중인 "AI·빅데이터 기반 의료·바이오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"의 기업지원 공용장비와 GMP시설에 대해 선정기업의 의견 우선 반영 검토
 -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타사업 연계 등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 - 최종 평가에서 우수(80점) 이상을 받은 컨소시엄에 대해 후속사업("의료기기 부품·모듈 국산화 고도화 지원사업"등) 신청시 우대 가점 부여
- O (사후관리) 선정기업은 사업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창원산업진흥원의 추적 관리에 협조하여야 하고, 아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 - 협약 종료 후 5년간은 매년 12월 말까지 본 건 지원사업으로 개발중인 제품의 개발과 활용 실적이 포함된 '성과 활용보고서'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* 협약 종료 년도는 제외한 이후 5년 간
 - 연구 성과를 발표할 때는 '창원시'와 '창원산업진흥원'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야 함
 -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(출원·등록)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,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(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)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*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(연구개발성과의 소유·관리) 및 시행령 제32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)에 따름
- (제품의 생산) 본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포함된 제품(연관제품 포함)은 창원시에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상품 최초 출시 후 5년간 창원시 관내에서만 제조하여야 함
 - 상품 최초 출시 후 <u>10년간 핵심제품은 창원시 관내에서 제조</u>하여야 함
 -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 3배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

Ⅵ 문의처 및 유의사항

O 문의처

구분	담당자1
이름	임성민 선임연구원
연락처	☎ 055-716-8772
이메일	slim@cwip.or.kr

O 유의사항

- 제출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상세히 작성 후 제출 요망
-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취소가 될 수 있음
- 선정평가에 의하여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
- 선정 전·후 허위사실 기재,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,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, 참여제한,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
-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지원기업이 부담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

O 동점자 처리 기준

-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① 혁신성 ② 원천성 및 권리성 ③ 기술개발전략 ④ 사업화 가능성 ⑤ 시장진출전략 ⑥ 의료·바이오 제조산업의 창원집적 ⑦ 주관기관의 가점 순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
- 위의 사항이 동일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재개최하여 따로 선정함
- 주관기관에서 회계정산비용 산정(※[붙임5]의 정산수수료율을 적용)

기탁사항

VII

- 연구시설·장비(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) 도입 심의
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'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'를 작성·첨부하여 본 원의 심의를 받아야 함
 - 원칙적으로 2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 구축은 불가이나, 연구 개발에 꼭 필요한 경우 심의를 통해 극히 인정됨
 - © 연구시설·장비라 함은 연구·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, 시험, 계측, 기계가공, 제조, 전처리, 영상, 교정, 데이터 처리,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 및 시설을 말함
 - ☞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·장비는 연구시설·장비로 산정불가하며,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
- O 연구성과의 관리 및 평가
 -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12월 말에 성과활용 실적이 포함된 '성과 활용보고서'를 제출하여야 함
 - 연구성과를 발표할 때는 '창원산업진흥원'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 임을 표시하여여 함
 -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(출원·등록)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 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,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 (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)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
- * ② (예외)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가능
- ** ④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(연구개 발성과의 소유·관리) 및 시행령 제32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)에 따름

[붙임1] 창원시 중점 육성 제품군

- O (1유형) AI·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진단기기 및 진단시스템
 - 내용 :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을 돕는 정밀하고 혁신적인 차세대 진단기기
 - 기술 융합 : 권리성이 강한 의료·바이오 기술 + 메카트로닉스, AI 알고리즘, 빅데이터 기술
 - 혁신형 의료기기군 :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, 차세대 체외진단기술, 융복합 영상진단기술
 - · 혈액, 체액, 조직 등의 생체 시료를 분석하는 경박단소한 차세대 체외진단기기 (진단화학로봇, 면역화학분석장치, 요분변분석장치, 유전자분석장치 등)
 - · X선 영상, MRI, CT 등 의료영상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영상진단기기 (진단용엑스선장치, 골밀도측정기, 의료영상처리장치,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)
- O (2유형) AI·빅데이터 기반 첨단 의료 로봇
 - 내용 : 환자의 치료와 재활, 장기적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첨단 의료로봇
 - 기술 융합 : 권리성이 강한 의료·바이오 기술 + 마이크로 메카트로닉스, 마이크로 로봇
 - 혁신형 의료기기군 :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, 의료용 로봇기술, 차세대 중재적 시술 및 수술 기술
 - · 적절한 재활과 휴식을 제공하는 로봇 재활치료기 및 스마트 환자케어기술(롱텀케어로봇) (의료용침대로봇 및 모듈, 보행 재활로봇, 상지 재활로봇, 거동보조 로봇, 건강모니터링 로봇 등)
 - · 수술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수술용 로봇(네비게이션 보조로봇, 미세자세 조종로봇, 복강경 수술로봇 등)
 - · 심장, 신경 등 주요 조직 재생과 심장질환, 암 치료 등 가능한 마이크로 로봇
- O (3유형) 우리시 소재 연구기관 연계 의료·바이오 기술 산업화
 - 내용 : 한국전기연구원, 한국재료연구원 등 우리시 소재 우수 연구결과 산업화
 - 기술 융합 : 한국전기연구원, 한국재료연구원 등 역내 연구기관과 기업 보유, 권리성이 강한 의료· 바이오 기술 산업화
 - 의료기기군 : 의료・바이오 소재・부품, 전기의료기기, 영상의료기기와 개발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

[붙임2] 우대 및 감점 목록

구분	우대 및 감점 기준	배점	
	① 참여기업이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경우		
가점 ② 진해 지식산업센터 기 입주기업 · 사업지원서 신청 전까지 입주계약 체결 및 관련비용 납부 완료 기업 포함			
7174	① 평가결과가 "중단(불성실)" 또는 "불성실수행"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총괄책임 자로 신청하는 경우 평가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(단, 소속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)	-2점	
감점	②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(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)으로 신청하는 경우	-1점	

[※]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, 가점 인정 불가

[붙임3] 지원제외 대상

- ※ 참여기관, 참여기관장, 과제(참여)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
- ※ 점수 마감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할 시 신청이 가능함

① 접수서류

- O 과제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☞ 금년도 및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

② 중복성 검토

- O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를 통해 확인하며,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중복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
- 연구자는 NTIS(www.ntis.go.kr)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중앙정부 및 타지자체 포함)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
 - ※ 유사과제 검색 방법: www.ntis.go.kr 로그인 → 과제참여 → 유사과제 → 유사성 검토
- O 신청한 연구개발과제가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
- 신청한 과제가 창원산업진흥원, 경남테크노파크 등 지원기관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

③ **참여율**

- O 과제(참여)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경우
 - ※ 과제(참여)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30% 이상 계상하여야 함

4 신용 및 기업상태

- O 기업이 부도·화의·법정관리 중인 경우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- 개인의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※ 단.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는 경우 예외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O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※ 채납 · 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

<관련 문의처>

- ※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→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
- ※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 →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)
- O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
- O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 - * 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,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"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"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, 시설투자(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·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, 시험등을 위한 투자 포함)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기업의 경우는 예외
 - ** 참여기관 22~24년, 3년치 결산 재무제표 제출(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(B/S), 비영리기관 제외) ***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3년치를 제출
-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(과제책임자 및 기업체) 또는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 및 협약 해지 조치

⑤ 기타 사업목적 등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최근 3년 이내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, 체불사업주
 - ※ 접수 마감일 이전 체불 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

-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기업의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가 아래의 내용중 하 나라도 해당되는 경우
 - 기업이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경우
 -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 - 민사집행법에 따라 '채무 불이행자 명부'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'채무 불이행자'로 등록된 경우
 - 파산, 회생, 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
 -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의견'인 경우
 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- 과제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 ※ 과제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30% 이상 계상하여야 함
- O 주관·참여기관이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 -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 등)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 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.

[붙임4] 기술성숙도(Technology Readiness Level) 예시

구분	TRL 1	TRL 2	TRL 3	TRL 4	TRL 5	TRL 6	TRL 7	TRL 8
의료기기	(기본원리) · 기초이론 정립	(기술개념/적용분야) · 개념 및 응용 분 야 정립	(개념검증) · 특허출원 · 기본성능 검증	시작품 저 (설계/제작) · 시작품 제작	네작 (신뢰성) · 시작품 성능평가	전임성 (실험실) · 초기 안전성 · 유효성 평가	상 (GLP) · GLP안정성· 유효성 평가	(임상) · 허가용 임상시험
의료기술			· 의료기술 개발 (진단법, 치료법 등)	· 의료기술 검증	· 의료기술 검증	· 임상시험	π±ο ο/ι	
의약품 (신약)	(과학적발견) · 기술개발 초기단계 · 과학적 발견을 통해 신기술 가능성 탐색	│ 수립	(개념검증; POC) · 기초연구, 정보수집 및 분석 · 신약개발 기술성 평가 · 초기후보물질 도출 및 작용기전 파악	· Non-GLP 생체내	(GLP 검증) · GLP 비임상연구 · 임상용 GMP 공정 확립	(임상1상) · 임상1상 진행·완료	(임상2상) · 임상2상 진행·완료	(임상3상) · 임상3상 진행·완료
생물학적 제제/백신	· 과학적 문헌 리뷰 · 초기 시장조사 결과 평가	· 연구계획 개발 · (동료)평가· 승인	· 후보 제제/백신 에 대한 in-vitro / in-vivo POC	· 지정된 실험실/ 동물모델로 후보 제제/백신의 POC·안전성 입증	· IND 신청을 위한 후보 제제/백신의 충분한 기술적 data 확보	· 임상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상1상 data 확보 · 임상 2상으로의 진입 지원	· 임상3상 계획 혹은 대용시험계획 승인	· CBER에 의한 BLA 승인
바이오마커	BRL 1	BRL 2	BRL 3	BRL 4	BRL 5	BRL 6		BRL 7
(Biomarker Readiness Levels)	· 기초개념 관찰 및 보고	· 바이오마커 평가기술 입증	· 분석적/실험적 개념 검증	· 실험실 환경에서의 요소/시스템 압증	· 관련 환경 (예:코호트)에서의 시스템 효능 입증	· 모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효능 테스트 및 입증		· 일반인에 대한 스크리닝/진단 테스트

[붙임5] 회계정산 수수료율(예시)

□ 위탁정산수수료규정

o 기본보수료

개발 사업비 규모*	정산수수료* (천원)
1억원 미만	987
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1,185
3억원 이상 5억원 미만	1,515
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	1,647
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	1,845
30억원 이상	2,043

- * 사업비 규모 : 정부출연금+민간현금의 합 (현물은 포함되지 않음)
- * 정산수수료는 부가세 포함금액임

ㅇ 공동참여기관 갯수에 따른 가산금

공동참여기관 수	가산금 가산금 없음 수수료의 10%		
O7H			
12#			
2개 이상	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%씩 가산		